



하루 한알 간장보호제

리버린³⁵⁰ 연질캡슐

(밀크사슬열매건조엑스)



[원료약품 및 그 분량] 1캡슐 중

■ 유효성분 : 밀크사슬열매건조엑스(생규) 350.00mg(살리마린으로서 196mg)

■ 첨가제(타르색소) : 청색 1호, 적색 40호

■ 첨가제(동물유래) : 젤라틴(기원동물 : 돼지, 사용부위 : 가죽)

■ 기타 첨가제 : 농글리세린, 레시틴, 산화티탄, 소르비톨 액(비결정성), 아자경화유, 에틸비닐린, 공기름, 향납

[성상] 황갈색의 유상 내용물을 함유한 암적색(검붉은 색)의 장방형 연질캡슐 (LV350)

[효능·효과] 다음 질환의 보조치료 : 독성간질환, 만성간염, 간경변

[용법·용량] 1일 1회, 1회 1캡슐

[사용상의 주의사항]

1.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

- 1) 심한 담도(쓸개길) 폐쇄 환자
- 2) 이 약의 과민증 환자
- 3) 12세 이하의 소아
- 4) 대두유(공기름)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
- 5)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

2.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

- 1) 임신, 수유부
- 2) 고지단백혈증, 당뇨병성고지혈증 및 췌장(이자)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

3.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.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

- 1) 드물게 위통 또는 설사
- 2) 알레르기 반응

4.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

- 1) 정해진 용법·용량을 지킬 것
- 2) 황달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
- 3)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장기복용시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
- 4)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.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히 조절한다.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.

5. 저장상의 주의사항

- 1)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
- 2)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봉하여(뚜껑을 꼭 닫아) 보관할 것
- 3)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염(잘못 사용)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

[저장방법] 기밀용기, 실온(1 ~ 30℃)보관

[포장단위] 90캡슐/상자(10캡슐/PTP×9), 180캡슐/상자(90캡슐/상자(10캡슐/PTP×9))×2)

[사용(유효)기한] 제조일로부터 24개월(케이스 표시일까지)

[제조자] (주)알피바이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-7

[제조의뢰·판매자] 태극제약(주)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제약공단3길 123 ☎ 소비자상담전화 080-300-8282

※ 본 의약품은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(KGMP)에 따라 엄격한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입니다.

만약 구입 시 사용(유효)기한이 지났거나 변질·변패·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일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.

※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.

※ 사용(유효)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(복용)하지 마십시오.

※ 이 약을 사용(복용)하기 전에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, 본 첨부문서를 이 약과 함께 보관하십시오.

※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(<https://www.taiguk.co.kr>)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(<https://nedrug.mfds.go.kr>) 및 QR코드를 참조하십시오.

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, **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**은 **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**에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 ☎ 1644-6223, 14-3330 | ☐ karp.drugsafe.or.kr

신청대상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, 장애,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

보상범위 사망일시보상금, 장례비, 장애일시보상금, 진료비

첨부분서 작성 연월일 : 2026. 04. 06